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519
- 제 안 자 : 이현찬 의원(외 11명)
- 제 안 일 : 2019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19. 4. 8. ~ 4.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본 조례에 재차 확인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관계법령과 개정조례안 비교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조례안(신설)
제39조(<u>비밀누설의 금지</u>)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u>자는</u>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u>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u>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u>비밀준수의 의무</u>) <u>이 조례에 따른</u>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u>사람은</u> 그 직무상 <u>알게 된 비밀을</u>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 헌법 제30조에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 사항은 부진한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을 제정(2005. 12. 23., 제정, 시행 2006. 3. 24.)하게 된 것임.

- 이러한 헌법적 가치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더불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준용 규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있고, 법 제48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벌칙조항 없이 단순히 이를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본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2. 제40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